

건설관련 법률상담

이원기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기업 회생 11

이번 회에는 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업회생과 기업의 오너 및 대표자의 법적 책임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 책임회사로서 기업의 채무가 곧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의 채무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가 기업의 채무나 기업의 일반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대표적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대보증 책임

차입금이나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하여 오너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연대보증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기업의 채무가 탕감되어도 같이 탕감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탕감되지 않은 채무는 연대보증인이 이를 변제를 하더라도 회생기업에 대하여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인 회생기업 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금의 차입 시나 상거래에서 연대보증 요구를 받게 되면 선불리 보증서에 날인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또 부득이 연대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도를 가급적 제한하고 명확히 하며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의 변경과 같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 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격 부인에 의한 책임

회생기업이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개인 기업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경우라면 오너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회생기업을 오너와 별도의 법적 주체인 법인이 아니라 오너 개인과 동일한 주체로 보아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대표자, 이사 등은 자신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불법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과 공동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한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마찬가지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오너는 정식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기업을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경영한 대표자, 이사나 오너의 법적 책임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추궁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15조의 조사확정 재판이 그것이다.

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기업의 대표자, 이사, 오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국세, 지방세

국세기본법은 주식 상장 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기업의 국세 체납이 있어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그 오너 등(지분

율 50% 초과 또는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 그 부족액을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너 등이 이에 따라 회사가 미납한 국세를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이 준용).

마. 임금

회생기업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면 대표자나 오너가 회생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생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계 후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예컨대 임금 채권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법적 책임에 대한 대응

기업이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단계가 되면 기업의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족한 자금으로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 있어 위에서 말한 오너나 대표자가 직·간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 하나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연대보증 채무

먼저 오너나 대표자는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보증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는 자신의 경영권이 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먼저 변제(또는 매출채권 양도, 기타 담보 설정)하려 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 심지어 먼저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채무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추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 문제가 될 위험성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 채무 문제는 자신이 행사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마련해 둔 정식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 책임

기업의 오너나 대표자 중에서는 회생절차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상 잘못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나 않을까 우려하여 회생신

청을 주저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의 부실을 키우고 회생절차 없이 기업을 일단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어 새로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기존 경영권을 일단 존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명백한 위법이나 임무 해태가 아니라면 오너나 대표자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국세, 지방세 임금

국세 지방세 임금 등의 채권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게 되는 점,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시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환가를 할 수 있는 점, 임금 체불은 오너나 대표자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국세 등의 채무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러한 채무만은 최대한 체납 또는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원기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동대학원 졸업
한국장기신용은행 근무
제43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세화

(현) 법무법인 유일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자본시장통합법, B법률, 기업구조조정)의 이론과 실무)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 통합도산법 과정 등 수료

법무법인 유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6층 (135-877)
대표번호 02)563-1588, 팩스02)563-8181